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8. 8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5. 7. 17

다. 상정일자 : 제3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골자

○감면대상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감면내용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동조례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 군)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 광역시에도 확대하기 위하여 내무부 준칙 <세제 13400-234호 '95. 7. 4>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 제3호의 개정과 제1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제3호의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이고, 제15조의 2의 규정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인데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것과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되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9조제4항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조세감면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내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1995. 8. 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면대상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나. 감면내용

-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다. 기 타 :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회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u>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u>신 설</u>)</p>	<p>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u>현행과 같음</u>) 1. (<u>현행과 같음</u>) 2. (<u>현행과 같음</u>) 3. <u>건설교통부</u></p> <p><u>제15조의 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u></p>

